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종사제한 확인 의무 확대 등〉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23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23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에 대한 종사제한 확인 의무 확대 등 (안 제19조의2 등)	3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22201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23.
3. 회 부 일 : 2026.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종사제한 확인 의무 확대 등 (안 제19조의2 등)

개정안은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②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략)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u>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u> ----- ----- -----.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현행	개정안
<u>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제한 사유 확인에 관한 특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하 “종사자등”이라 함)의 취업제한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었고,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6. 시행).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 부칙 제3조는 법률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종사자등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여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해당 종사자등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¹⁾

1) 성범죄·마약범 배달기사 막는 법 나왔지만...“사각지대 불안해”, 2025.1.10.,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0/130833779/1>

이에 개정안은 ① 사업자나 영업점으로 하여금 종사자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②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등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사자등에 의한 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종사자등에 대한 종사제한 여부 주기적·(재)확인>

	현 행	개 정 안
확인시점	최초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시)	최초 및 최초확인 후 <u>2년마다</u>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등에 대한 재확인 후 종사제한 해당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u>가능</u>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u>금지</u>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죄경력조회 결과(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현행법상 종사제한 사유와 무관한 범죄경력도 드러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종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종사자등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청(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발급받고 있는데,²⁾ 그 결과에 현행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와 무관한 범죄경력이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경찰청에서 종사자들의 종사 제한 결격사유 여부만 통보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바,³⁾ 「경비업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⁴⁾ 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부칙을 삭제하여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⁵⁾ 등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3) 경찰청은 개별 법률에 종사 제한 결격사유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규정할 경우 결격 사유 해당 여부만 기재되어 있는 별도양식으로 회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4)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의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당연시하고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⁶⁾에 위배되고, 현재 종사자들에 대해 종사제한 사유를 적용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 원칙⁷⁾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⁸⁾

따라서, 개정안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 종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가능 여부, 종사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직업행사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2001헌마700등, 2003.10.30.)

- 6) 침해의 최소성 원칙의 내용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똑같이 효율적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2006. 1. 26. 2005헌바18)
- 7)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방법에 있어 적합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 8) 또한 법원행정처는 과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고려할 때 살인이나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고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및 개정법률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 제19조의2를 적용하는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당연시하고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현재 종사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제21대국회 제408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2023. 7. 26.) 회의록 중 발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종사자의 시장 진입·이탈이 잦은 업무의 특성과 종사자 규모(약 36만 명)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또는 영업점)에서 주기적(2년)으로 모든 종사자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판별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현행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배달업 종사 제한과 무관한 범죄 경력까지 표시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2년 주기로 반복 조회 시 민감정보의 과다 노출이 우려되는 바, 2년 주기 정기 조회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유무만 회신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객관적 판단 없이 현행 법 개정 전 발생한 사유만으로 종사 중인 사람을 해고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및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도 보장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행 부칙을 유지(신중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사)

현행 종사자의 종사제한 조회·판별은 사업자(영업점)가 민감정보인 범죄 경력을 수기로 대조·판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판단과 판단주체의 정당성·전문성 측면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확인 대상을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2년 주기 정기 확인 의무 부과 시 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민감정보의 범위와 규모만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종사자 본인이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경찰청에서 종사제한 해당 여부만 판정·통보하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